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상점표

구분	상점 내역	상점
필수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 참석	5점
	소방, 화재 대피 훈련 참석	5점
각종 교육	대학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수료 (수료증 사본 제출)	10점
	기숙사에서 공지한 건강관리센터, 인권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	5점
시설 및 위생 관리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복도 및 식당에 비치된 공용 기구 청소 (행정실 주관하에 가능, 임의 청소 불가)	5점
봉사	인턴 및 사생회 부재 시 대신 점호를 진행한 경우	5점
안전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신고하거나 대처한 자	5점
기타	기숙사 카페 공지된 상점 활동을 한 경우	공지된 상점
	공동생활에 유익이 된 행위를 한 경우 (예시: 외부인 침입 신고 등)	3점

※ 유의사항

- ① 누적 벌점점수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강제 퇴사 처리됩니다.
(상점으로 벌점을 최종 상쇄하더라도 누적벌점 25점에 도달했으면 생활태도 Fail로 차년도 입사불가)
- ② 생활태도 기본점수 Pass 기준 : +5점 이상 (최종 상,벌점의 합계)
 - 예시1 : 상점5점 + 벌점10점 ⇒ -5점으로 Fail
 - 예시2 : 상점10점 + 벌점5점 ⇒ +5점으로 Pass
- ③ 생활태도 점수는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별점표

구분		별점 내역	별점
점호	공통	00:00 ~ 05:00 기숙사 입실	5점
		00:00 ~ 05:00 기숙사 점호 후 무단 이탈	20점
		점호 태도 불량 (방을 이탈하는 경우 등)	1점
외박	공통	무단 외박 (평일, 공휴일, 주말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외박 신청을 잘못된 경우)	5점
		외박 일수 월 9회 초과 (학과MT 및 답사 등 학과의 공식적인 활동, 미술대 야간작업 등은 행정실에서 사전 보고 필요)	회당 5점
안전	공통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키는 경우 (입·퇴사 시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의 허가 하에 입실 가능)	강제퇴사
		배달 음식을 건물 안에서 받은 경우 (층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각 층 앞에서 받을 수 있음)	20점
		공용공간 내 개인물품 적치로 인해 타인의 이용 또는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3점
		출입 관련 비밀번호 또는 카드 외부인 유출	20점
		행정실의 비상 열쇠 또는 카드 사용	1점
		개인 전열 기구(다리미,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사용	강제퇴사
		점호 시간 이후에 배달 음식 수령	10점
	내부	출입 카드 분실 또는 출입 게이트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5점
		사용 금지된 문으로 출입한 경우 (옥상, 주방 등) 기숙사 내 출입 금지된 구역에 출입한 경우	강제퇴사
	외부	방 비밀번호 변경 후, 즉시 행정실에 알리지 않은 경우	10점
절도 및 폭행	공통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생의 음식을 무단 취식한 경우	10점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0점
		타인의 물품(우편물, 택배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절도 행위	강제퇴사
		폭행 등으로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퇴사
위생	공통	개인 쓰레기를 공용공간(복도, 화장실, 식당 등)에 버리는 경우	3점
		기숙사 방문 시 또는 클린데이에 참여 시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참한 경우	3점
	내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또는 상한 음식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3점
		냉장고 청소 시, 공지한 시간까지 본인의 음식을 치우지 않는 경우	3점
		냉장고에 본인 이름 및 호실을 기재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한 경우	3점
		주방 싱크대, 조리시설 및 스테디룸 등 공용시설 이용 후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점
소음	공통	점호 이후 각종 야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점
기타	공통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 인화물질, 주류(빈병포함)를 보관하는 경우	강제퇴사
		기숙사 내부에 반려 동물 또는 곤충 동반	강제퇴사
		각종 생활수칙(점호, 외박 등) 점검 시 허위사실로 보고한 경우	20점
		행정실이 요청한 상담 불응	5점
		행정실에서 공지한 내용의 절차 및 기간의 미준수	공지된 별점
		다른 사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숙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예시: 과도한 소동,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퇴사
내부	기숙사 공용공간의 물품을 해당 공간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3점	

※ 유의사항

- ① 누적 별점점수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강제 퇴사 처리됩니다.
(상점으로 별점을 최종 상쇄하더라도 누적별점 25점에 도달했으면 생활태도 Fail로 차년도 입사불가)
- ② 생활태도 기본점수 Pass 기준 : +5점 이상 (최종 상, 별점의 합계)
 - 예시1 : 상점5점 + 별점10점 ⇒ -5점으로 Fail
 - 예시2 : 상점10점 + 별점5점 ⇒ +5점으로 Pass
- ③ 생활태도 점수는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